

4.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12차) : 2021. 03

개정(12차) : 2021. 09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어시험)

- ①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② 석·박사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TOEFL 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외국어시험 합격기준)

-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석·박사 모두 TOEFL 점수 500점 이상으로 하며(iBT 61점), 이에 준하는 TOEIC 점수 700점, TEPS 327점(개정전 TEPS 600), IELTS(General) 6.5, IELTS(Academic) 5.5 이상도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② 대학원 입시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만족하는 자는 외국어성적 제출을 면제한다.
- ③ 학위과정 수료(외국어시험, 자격시험 합격) 후 동일한 과정으로 다시 입학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전공실시 영어시험)

- ① 석사과정생으로서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학점(18학점) 이상 이수한 시점에서, 외부공인(TOEFL, TOEIC, TEPS, IELTS)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여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점 다음 학기에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어시험 (이하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석사과정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3학기 이상의 시점에서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통합과정생으로서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학점(48학점) 이상 이수한 시점에서, 외부공인(TOEFL, TOEIC, TEPS, IELTS)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여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점 다음 학기에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어시험 (이하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④ 박사과정생으로서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학점(30학점) 이상 이수한 시점에서 외부공인(TOEFL, TOEIC, TEPS, IELTS)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여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점 다음 학기에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어시험 (이하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⑤ 전공실시 영어시험은 매학기 한 차례씩 실시하며 대학원 주임교수가 학부교수 회의에서 선발한 영어시험 출제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주관한다.
- ⑥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험 실시 1주일 전까지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지원서(별지 #4-1 참조)와 소정의 응시료를 학부사무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전공실시 영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조 (제2외국어 시험)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제2외국어 시험은 폐지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5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4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4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내규(제3조 3항)는 개정일 (2017년 3월 1일) 기준 재적생의 입학시점까지 소급 적용한다.
8. 본 개정내규(제3조 1항, 2항)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내규(제4조 1항, 3항, 4항)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내규(제3조 1항)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지원서

사 진

수험번호			
과정(학기)		성명	학번
전화번호 (이동전화) ()		주소	
이수학점		등록여부	
학기	이수 과목명(학정번호)	학기	이수 과목명(학정번호)
1		2	
3		4	
외국어(영어)시험 응시경력			
※ 시험종류(TOEFL/TOEIC), 시험일, 점수 순서로 최근 2년 동안의 경력 기재			
상기 지원자의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를 허락합니다. 지도교수: (인)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4항에 따라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			

6.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8차) : 2019. 3

개정(10차) : 2019. 1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졸업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시험의 종류)

- ① 석사학위과정을 위한 자격시험은 전공필기시험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을 위한 자격시험은 전공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조 (자격시험의 실시시기 및 응시자격)

- ① 석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은 대학원 과정의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자격시험은 대학원 과정의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은 대학원 과정의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④ 본교 석사학위 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 종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을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다.
- ⑤ 자격시험의 응시지원자는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거쳐 응시과목을 결정하고 지원서류(별지 #6-1 참조)를 시험 실시 전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시험의 응시과목)

- ①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필기시험 응시과목은 (프로그램 내 과목 중 각기 다른 교수의 2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수강한 과목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필기시험 응시과목은 (프로그램 내 과목 중 각기 다른 교수의 2과목 포함 3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수강한 과목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자격시험의 문제 출제)

자격시험의 문제 출제는 지원학생 응시지원서의 응시과목 선정에 따라 해당 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직접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교수의 연구년 출장 혹은 외부강사 과목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문제 출제 및 채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동의를 거쳐 유사전공 교수가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자격시험의 합격 및 재시험)

- ① 자격시험의 각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 ② 불합격된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에 해당과목의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불합격된 과목이 2 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 ③ 학위과정 수료(외국어시험, 자격시험 합격) 후 동일한 과정으로 다시 입학한 경우 자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석사의 경우 A(A+, A0, A-) 학점을 취득한 자격시험 교과목의 경우 전공필기시험을 면제하고 해당 교과목을 합격 처리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4조, 제6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3조, 제5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내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내규(제4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내규(제6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내규(제6조 3항)는 시행일 기준 재적생의 입학시점까지 소급 적용한다.
10. 본 개정내규(제6조 4항)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내규(제4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박사과정 자격시험 응시지원서

사 진

수험번호			
과정(학기)		성 명	학 번
전화번호 (이동전화)	()	주 소	
외국어시험 합격일(접수)	20 . . . ()	이수 학점	등록여부
학 기	이수 과목명(학정번호)	학 기	이수 과목명(학정번호)
1		2	
3		4	
응 시 과 목	과목명(학정번호)	개설년도(학기)	강의교수/강사
	1.		
	2.		
	3.		
<p>상기 지원자의 (석사·박사)과정 자격시험을 허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인)</p> <p>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4항에 따라 (석사·박사)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 원 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p>			

* 첨부: 성적증명서 1부, 외국어시험 합격증빙서류 1부

* 2003년부터 외부강사의 수강과목은 자격시험 과목에서 제외함.

7.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3차) : 2017. 3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위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자격)

- ① 대학원 학위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즉시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학부-대학원 연계전형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의 통합과정 중단 승인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한 양식을 따른다.

제3조 (제출시기 및 방법)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즉시 해당학생이 작성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 주임교수의 졸업요건에 관한 검토를 거친 후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 정해진 시기 내에 학교 대학원 사무실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박사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학기에 논문 예. 본심을 받을 수 있음)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석·박사 학위과정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8차) : 2017. 3
개정(9차) : 2019. 9
개정(10차) : 2020. 3
개정(11차) : 2020. 9
개정(12차) : 2021. 3
개정(12차) : 2021. 09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사과정 졸업요건)

- ① 석사과정학생은 다음의 기본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학칙에 정해진 수업교과과정 이수조건을 만족한 자
 - 공과대학 공통과목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ENG6060)」또는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 (이수기한: 학위논문 제출 전,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전)
 - 외국인의 경우 TOPIK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2021년 1학기 이후 입학생)
 - 석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 학칙으로 정한 학기 수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연구계획서 제출학기부터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②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부 취득학점으로 이중인정 안됨)
- ③ 편입생의 이수학점 인정 여부는 학교에서 정한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서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⑤ 석사과정 논문심사요건(2007년 9월 이후 입학생)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또는 게재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 국내외 학술발표대회 논문직접발표를 1회 이상을 하거나 포스터 세션 발표를 1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연구(CEE7900)」를 수강하여 3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연구」 과목은 「개별지도연구」 과목의 수강을 마친 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각 세부전공 별로, 전공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졸업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박사과정 졸업요건)

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다음의 기본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

- 학칙에 정해진 수업교과과정 이수조건을 만족한 자
- 공과대학 공통과목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ENG6060)」또는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 (이수기한: 학위논문 제출 전,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전)
- 외국인의 경우 TOPIK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2021년 1학기 이후 입학생)
-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으로 정한 박사과정 학기수(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연구계획서 제출학기부터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학위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2) 석·박사통합과정

- 학칙에 정해진 수업교과과정 이수조건을 만족한 자
- 공과대학 공통과목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ENG6060)」또는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 (이수기한: 학위논문 제출 전,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전)
- 외국인의 경우 TOPIK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2021년 1학기 이후 입학생)
-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으로 정한 대학원 학기수(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연구계획서 제출학기부터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학위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3)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 자격요건

a. 2007년 9월 이전 입학생

- SCI(E) 학술지와 국내전문학술지에 각각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또는 게재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b. 2007년 9월 이후 입학생

- SCI(E) 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또는 게재증명 제출) 1회 이상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 직접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SCI(E) 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또는 게재증명 제출) 국내전문학술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 국제학술발표대회 1회 이상 논문 직접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SCI(E) 학술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또는 게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

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c. 2014년 3월 이후 입학생

- SCI(E) 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또는 게재증명 제출) 국내전문학술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 국제학술발표대회 1회 이상 논문 직접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SCI(E) 학술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또는 게재증명 제출) 국제학술발표대회 1회 이상 논문 직접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대상학생이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③ 해당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업적 평가 시 석사학위 활동에 의한 연구업적도 포함시킨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연구1(CEE9900)」을 수강하여 3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연구1(CEE9900)」과 「박사학위논문연구2(CEE9901)」를 수강하여 각 3학점씩 총 6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연구」 과목은 「개별지도연구」 과목의 수강을 마친 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세부전공 별로, 전공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졸업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3조, 제4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3조, 제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3조, 제4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 별지 #8-1)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 환경공학 세부전공 내규

제정 : 2019. 12

제1조 석사과정 졸업요건

- ① 석사과정 논문심사요건(2019년 9월 이후 입학생) :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2조 박사과정 졸업요건

- 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 자격요건(2019년 9월 이후 입학생) :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SCIE급 학술지 중 Web of Science (Clarivate사) 주제별 카테고리 순위 상위 25%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하였거나 게재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이 복수의 카테고리에 속한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선택할 수 있고, 투고 시점과 게재 시점에 따라 다를 경우에도 가장 높은 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

9. 석사학위 졸업논문심사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4차) : 2014. 8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 (1) 외국어시험(영어) 합격
- (2) 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필기시험) 합격
-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 (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5) 학위논문 예비심사 실시 및 판정
- (6) 학위논문 본심사 실시 및 판정

제3조 (심사단계)

석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4조 (석사학위 논문심사 일정)

- ① 석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일정은 학부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가 학과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충분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이전에 심사를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위한 기본일정은 다음의 심사과정이 포함된다.
 - 예비심사
 - 본심사

제5조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신청서(별지 #9-1)을 작성하고 졸업요건 만족을 증빙하는 제반서류 및 학위논문 제출자 연구실적목록(별지 #9-2)을 준비하여 대학원 주임교수의 검토를 필한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명부가 학교 대학원 사무실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석사학위 졸업논문의 논문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회의 당연심사자(주심)가 되고 논문심사위원 선정신청서에 명기된 두 명의 심사위원이 부심을 맡는다.

제6조 (심사 자료의 제출)

- ①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주·부심용 심사논문 및 연구실적목록 3부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본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주·부심용 심사 논문 및 예비심사 이후의 개선사항 요약자료 3부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심사자료의 제출이 어려워 논문심사를 연기하려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심사 연기신청서(별지 #9-3)을 심사자료 제출기한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진행)

-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최소 30분에 걸쳐 진행한다.
- ② 논문심사는 공개발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은 논문제출 및 공개발표요령에 따른다.

제8조 (심사판정)

논문심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9조 (심사논문의 작성)

석사학위 심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5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6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2조, 제7조)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4조, 제9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9-1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신청서

학 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 별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내용요약			
심사논문 제출예정일		논문심사 예정일	
심사위원	지도교수(주심):		
	심사위원(부심):		확인 ()
	심사위원(부심):		확인 ()
<p>상기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p>			

첨부: 졸업요건 만족 증빙서류 일체, 연구실적목록

별지 #9-2

석사학위논문 제출자 졸업요건 및 연구실적목록

20 년 월 일 현재

학 기	석사 학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핸드폰)	
지도교수		세부전공	
졸업요건 확인	<small>※ 학과 및 학교에서 정한 영어시험합격, 석사학위자격시험합격(정공필기시험, 석사과정 이수학점, 총평량평균 등 졸업요건의 만족여부를 항목별로 기재</small>		
국제 학술지 (SCI(E) 여부 기재)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내 학술지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제 학술대회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내 학술대회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기타 실적			
<small>※ 논문의 게재와 심사중임을 구분하여 그 상황을 명확히 기입하며, 저자, 년도, 제목, 저널명, volume, 쪽수 순으로 표기할 것. 필요 시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 됨. 첨부: 졸업요건 만족 증빙서류 일체</small>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심사 연기신청서

학 기	석사 학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 별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논문	(제목)		
	(내용요약)		
심사위원	지도교수	부심	부심
논문제출 예정일		심사 예정일	
연기사유			
<p>상기와 같은 연유로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지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p>			

10.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에 관한 내규

제정 : 1998. 10

개정(5차) : 2014. 8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 (1) 외국어시험(영어) 합격
- (2)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 (4)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 신청
- (5) 박사학위 예정자 논문공개발표
- (6)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7) 학위논문 예비심사 실시 및 판정
- (8) 학위논문 본심사 실시 및 판정

제3조 (심사)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4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일정)

- ①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일정은 학과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가 과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충분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이전에 심사를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위한 기본일정은 다음의 심사과정이 포함된다.
 - 박사학위 예정자 논문공개 발표
 - 예비심사
 - 본심사

제5조 (박사학위 예정자 논문 공개발표의 실시)

- ①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본심사를 진행하기 전 모든 박사학위 예정자들은 논문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논문공개 발표를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 신청서(별지 #10-1)를 작성하고 졸업요건 만족을 증빙하는 제반서류와 연구실적목록(별지 #10-3) 및 증빙자료사본 1부를 함께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논문 및 논문의 핵심내용과 창의성을 설명한 요약본 (5쪽내외, 국문작성)을 심사일 최소 1주일 전까지 과사무실에 제출하여 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발표 대상자는 심사논문의 내용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한 1회 이상의 공개 발표 경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심사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박사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본 심사의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신청서(별지 #10-2 참조)를 작성하고 대학원 주임교수의 검토를 필한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명부가 학교 대학원 사무실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박사학위 본심사의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 위원회의 당연심사자(주심)가 되고 논문심사위원회 선정신청서에 명기된 네 명의 심사위원이 부심을 맡는다. 이때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외부 심사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07년 9월 이후 입학자는 최소 1인 이상의 외부 심사 위원과 외국 심사위원 1인이 포함 의무화 한다.

제7조 (본심사 심사자료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일정에 따라 첫 본심사의 경우 심사용 학위논문과 연구실적목록을, 이후 연속되는 본심사의 경우 심사용 학위논문과 개선사항 요약자료(국문)를 과사무실에 제출하여 도장을 받은 후 심사일 최소 1주일 전 까지 논문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본심사의 진행)

- ① 박사학위논문 본심사는 최소 60분 이상에 걸쳐 진행한다.
- ② 논문심사는 공개발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심사판정)

논문심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10조 (심사논문의 작성)

박사학위 심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6조, 제7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5조, 제6조, 제10조)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4조, 제6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내규(제4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 신청서

학 기	박사 학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 별	
지도교수		세부전공	
논문제목	(한글)		
	(영문)		
공개발표경력	※ 날짜(시간), 장소, 발표행사명, 논문발표제목, 참석인원(모든 참석교수명 외 대학원생 몇인) 순서로 기재		
졸업요건 확인	※ 학과 및 학교에서 정한 영어시험합격, 박사학위자격시험합격 박사과정 이수학점, 총평량 평균, SCI(E) 논문 졸업요건 등의 만족여부를 항목별로 기재		
<p>상기와 같이 졸업요건을 만족하고 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p>			

첨부: 졸업요건 만족 증빙서류 일체,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 증빙자료사본

별지 #10-2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신청서

학 기	박사 학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성 별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내용요약			
학과심사논문 제출예정일		본심사 1차 예정일	
심사위원	지도교수(주심):		
	심사위원(부심):		확인()
<p>상기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주임교수 귀하</p>			

박사학위논문 제출자 연구실적목록

20 년 월 일 현재

학 기	박사 학기	학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핸드폰)	
지도교수		세부전공	
국제 학술지 (SCI(E) 여부 기재)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내 학술지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제 학술대회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국내 학술대회	()편 중에서, ()편 게재, ()편 accept		
기타 실적			
※ 논문의 게재와 심사중임을 구분하여 그 상황을 명확히 기입하며, 저자, 년도, 제목, 저널명, volume, 쪽수 순으로 표기할 것. ※ 논문의 증빙서류로 추후 해당 논문의 사본 혹은 공식적인 accept letter를 첨부할 것.			